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1616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20	김윤덕의원	'24. 7.3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2211580	김승수의원	'25. 7.18.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 8. 21.)
				소위 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2212339	양문석의원	'25. 8. 25.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 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2212923	임오경의원	'25. 9.11.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 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2213309	이성윤의원	'25. 9. 2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 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2216257	김재원의원	'26. 1. 22.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6. 2.23.)
				소위 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2216613	박정하의원	'26. 2. 5.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6. 3. 24.)
				소위 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9. 3.)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9. 16.)는 위 7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음악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로 인한 홍보·유통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함에 따른 사후관리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이미 「방송법」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하게 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아울러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대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장면 등이 동

일한 내용으로 연출·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나 제재조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다. 음악영상물등에 관한 등급분류 규정을 삭제하고, 음악영상물 자체 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 규정을 정비함(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11.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내용정보”를 “방송광고영화의 판단 기준·절차, 내용정보”로 한다.

4. 「방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의규정 및 같은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이하 “방송광고”라 한다)와 그 방송광고의 핵심 장면·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편집·제작한 광고영화(이하 “방송광고영화”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① 영화업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대상에 대한 방송광고영화

2.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영화 및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심사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온라인비디오물."을 "온라인비디오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한다)

제50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온라인비디오물"을 각각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를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0조의4제3호"를 "제50조의4제3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0조의4제2호"를 "제50조의4제2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제72조제1호 및 제2호 중 "영상물등"을 각각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를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중 “온라인비디오물”을 각각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의”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음악영상물등”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사후관리위원회”를 “사후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후관리위원회”를 “사후관리센터”로 한다.

제91조제3호 중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제50조의8제1항ㆍ제3항, 제72조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광고영화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

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최초로 등록한 날까지 이 법 시행 전의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신 설> 11.·12. (생 략) ② 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 1. ~ 10. (현행과 같음) 11.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2.·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② ---제13호----------.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방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의규정 및 같은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이하 "방송광고"라 한다)와 그 방송광고의 핵심 장면·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편집·제작한 광고영화(이하 "방송광고영화"라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⑩ ---------- 방송광고영화의 판단 기준·절차, 내용정보----------.
<신 설>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① 영화업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대상에 대한 방송광고영화 2.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영화 및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심사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50조(등급분류) ① ----------. ----------

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2. ----------온라인비디오물 <단서 삭제>
<신 설>	2의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

및 제공	----------
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4호----------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50조의4제2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3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2조(직무) ----------.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1.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
2. 영상물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2.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의----------
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의----------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3조(구성) ① (생 략)	제7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② ----------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영상물등·음악영상물등----------.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소위원회 등) ① (생 략)	제79조(소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사후관리센터-------.
③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③ --------- 사후관리센터----------.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생 략)	의 위원 4. (현행과 같음)